

# 울 산 지 방 법 원

## 제 2 민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	2014나11611 손해배상(기)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박숙영
제 1 심 판 결	울산지방법원 2014. 11. 25. 선고 2014가소31205 판결
변 론 종 결	2015. 4. 29.
판 결 선 고	2015. 5. 27.

### 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 
피고는 원고에게 7,77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8. 27.부터 2015. 5. 2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 중 1/4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8. 27.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#### 가. 사실의 인정

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호증, 제2호증, 제3호증, 제6호증, 제9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(1) 원고는 2014. 7. 30. 부산지방법원 2012타경36226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산 임야 23m<sup>2</sup>(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)를 매수하여 2014. 8. 27.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(2) 이 사건 토지는 1975. 2. 27. 건설부고시 28호로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는데, 그 과정에서 인접토지인 부산 영도구 봉래동 토지에 통합되어 소멸되었음에도 지적공부의 정리가 누락되어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.

(3)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앞서 본 부산지방법원 2012타경36226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건물 사이의 공

지로 기재되어 있다.

#### 나. 판단

피고는 지적공부를 작성·관리함에 있어 토지의 소재·면적·경계 등을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등재하여야 하고, 또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목적물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토지에 통합되어 소멸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지적공부의 정리를 누락하여 이 사건 토지가 지적공부 및 등기부상으로는 존재하는 것으로 방치하고, 또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가 소멸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, 지적공부와 경매절차의 현황조사서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.

#### 다.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피고의 불법행위의 시점은 이 사건 토지가 위 토지에 통합되고 그 토지 소유자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1977. 9. 23.이고,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불법행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, 또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멸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매각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 2. 손해배상의 범위

### 가. 경락대금 및 소유권이전비용

갑 제6호증,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7,120,000원에 경락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,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비용으로 법무사 수수료 등 총 650,1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락대금 7,120,000원과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중 원고가 구하는 650,000원 등 합계 7,770,000원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#### 나. 위자료

원고는,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,23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(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7249 판결).

살피건대,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, 이를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·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,77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일인 2014. 8. 27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. 5. 27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

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,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최윤성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정우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김승현